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업무 및 기능을 추가하고 보조금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시설의 업무 및 기능에 장애인생산품의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한 사항 (안 제4조)

-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관련 규정 마련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0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3, 팩스 032-440-8764, 이메일 hy01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장애인생산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한 사항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4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9. (생략) <u><신설></u> 11.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업무 및 기능) ----- ----- ----- 1. ~ 9. (현행과 같음) 10. 「장애인생산품의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한 사항 11.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 ③ (생략) <u><신설></u>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별표 1]

시설의 명칭 및 위치

구 분	명 칭	위 치
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30
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357번길 105-19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인천광역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345-30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제22조(조례)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장애인복지법 -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 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장애인복지관 운영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으로 연간 2,972백만원 소요됨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으로 연간 161백만원 소요됨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	인건비	관리운영비	비고
계	3,133,689	2,952,419	181,270	
장애인복지관운영	2,972,219	2,797,419	174,800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161,470	155,000	6,470	

다. 재원조달방안

- 장애인복지관 운영 : 시비 100%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 국비40%, 시비 4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박영애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입	장애인복지관운영	2,972,219	3,061,380	3,153,220	3,247,810	3,345,240	15,779,869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운영	161,470	166,310	171,300	176,440	181,730	857,250
	소계	3,133,689	3,227,690	3,324,520	3,424,250	3,526,970	16,637,119
세출	장애인복지관운영	2,972,219	3,061,380	3,153,220	3,247,810	3,345,240	15,779,869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운영	161,470	166,310	171,300	176,440	181,730	857,250
	소계	3,133,689	3,227,690	3,324,520	3,424,250	3,526,970	16,637,119
재원 조달							
국 비		64,588	66,524	68,520	70,576	72,692	342,900
시비	소 계	3,069,101	3,161,166	3,256,000	3,353,674	3,454,278	16,294,219
	일반회계	3,069,101	3,161,166	3,256,000	3,353,674	3,454,278	16,294,219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